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469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469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392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엠

담당변호사 임동규, 임동호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변론종결 2021. 12. 10.

판결선고 2022. 1.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3923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별지